

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련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문

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일환으로,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등록외국인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합니다.

1. 적용대상

○ 등록외국인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의 미성년 자녀

※ 단, 아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입국허가 절차대로 변동없이 적용

< 예방접종완료자 >

- ▶ **(2차 접종자)** 국내 또는 해외에서 2차 접종 완료* 후 14일 경과, 180일 이내인 사람
* 아스트라제네카, 모더나, 화이자는 2차 접종,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
※ (유효기간 계산 예시) '21.11.1.부 2차 접종 시
1) 14일 경과한 날은 '21.11.15.로, 11.16.부터 접종증명 효력 인정
2) 2차 접종 후 180일은 '22.4.30.로, '22.4.30. 24시까지 접종증명 효력 인정
- ▶ **(3차 접종자)** 접종 완료일부터 효력 인정

※ 아래 ①, ②, 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

- ① 외교(A-1), 공무(A-2), 협정(A-3) 및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소지자
- ② '20.5.31.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(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내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)
- ③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

2. 신청방법 및 허가절차

-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(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신청 대행 허용)
 - ※ 단,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신청 가능 (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불허될 수 있으며, 민원혼잡으로 인하여 탑승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)
- 복수 재입국허가 발급
 - 허가기간 내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으며, 그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장 1년까지 부여
 - ※ 단, 공항만에서는 허가기간 내 1회 재입국 가능한 **단수 재입국허가**만 가능
- 수수료 면제

3. 제출서류

- 예방접종 증빙서류 : 아래 1), 2) 중 택일 (붙임1)
 - ※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 체류자격자(부 또는 모)의 서류로 같음
 - 1) 종이증명서(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확인서)
 - 발급방법 : ①접종기관(예방접종센터, 위탁의료기관) 또는 보건소 방문
②온라인(본인) 발급*
 - * 정부24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<https://nip.kdca.go.kr>)에서 직접 출력
 - ※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(종이, 전자) 발급 가능
 - 2) 예방접종 스티커
 - 발급방법 :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→ 신분증* 뒷면에 부착·배부
 - *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 등
- 재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 동의서 (붙임2)
- (미성년 자녀의 경우) 가족관계 입증 서류*
 - * 주 체류자격자(부 또는 모)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본국에서 발행한 공적 서류

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등 양식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20. 9. 11.>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①-2. 예방접종확인서(해외접종자, 종이증명서)

호 No. COVID-19 예방접종확인서 Confirmation of COVID-19 Vaccination			
Name		생년월일 Date of Birth (Month/Day/Year)	
		성별 Sex	
주소 Address			
접종명 Vaccine	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	접종일 Date (Month/Day/Year)	접종국가/기관 Country/Clinic

위 사람은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· 예방접종확인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국문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. 출국 등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접종국가에서 제공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위변조,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「형법(제225조, 제229조)」에 따라 형사처벌*될 수 있으며,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9조, 제83조)」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**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. 외국인의 경우 「출입국관리법(제11조 및 제46조)」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*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,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10년 이하의 징역 (동일인인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 가능)

※ 또한, 예방접종확인서의 위변조, 위변조한 확인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,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된 경우,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※ Fabrication, falsification, or fraudulent submission of this document will lead to imprisonment of up to 10 years (punishable as concurrent crimes), a fine of up to 100,000 KRW, and/or claims for damages such as the cost of medical care provided to the patients infected as a result. Deportation or entry ban will also be imposed in the case of foreign nationals.

* Relevant laws: Criminal Act (Articles 225, 229),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(Articles 49, 83), Immigration Act (Articles 11, 46)

년

월

일

Year

month

day

지자체장

직인

Seal

② 예방접종 스티커

접종완료 21.06.04	제ABC00001호 홍길동  질병관리청	추가접종 21.12.20	ABC00001호 홍길동  질병관리청
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	--

재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 동의서
NOTES FOR RE-ENTRY AND CONSENT FOR CONFIRMATION

- 아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,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 말소 처리합니다.

Re-entry permission shall not be issued unless you provide consent to the following terms. Leaving the Republic of Korea (ROK) without re-entry permission will result in cancellation of Alien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-2 of the Immigration Act.

-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.

PCR 음성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탑승이 차단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All persons who wish to re-enter the ROK shall carry and present result of Negative PCR COVID-19 test executed (the sample collected) and issued within 48 hours of the departure date to re-enter the ROK. Failure to carry and present a negative COVID-19 certificate will lead to denied boarding or re-entry denial.

-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로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별 방역 정책(접종증명 유효기간 만료 후 추가 접종 의무화 등)에 따라 항공기 등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Boarding may be restricted even for those granted a Re-entry Permit as a holder of COVID-19 vaccination certificate, depending on each country's quarantine policies (Booster shot mandate after expiration of vaccination certificate and others).

☐ 동의함/Agree ☐ 동의하지 않음/Disagree

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입국허가는 불허됨,

RE-ENTRY PERMISSION SHALL NOT BE ISSUED UNLESS YOU AGREE

일자Date 2022년 (year) 월(month) 일 (day)

(서명 또는 인) (signature or seal)

재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 동의서 外国人“再入境”韩国须知及知情同意书

- 아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,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 말소 처리됩니다.

如果不同意以下内容，不能获得韩国的“再入境许可”。如果不办理“再入境许可”手续离开韩国，其在韩外国人登记事项将依照《大韩民国出入国管理法》第三十七条之二规定被注销。

-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.

PCR 음성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탑승이 차단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持“再入境许可”赴韩人员须持有并提交在当地出发前48小时内完成检测并获得的新冠病毒核酸检测阴性证明。如果不持有并提交核酸检测阴性证明，将会被拒绝登机或入境。

-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확인서 소지자로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가별 방역 정책에 따라 항공기 등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即使是完成新冠疫苗全程接种的人员获得的“再入境许可”，根据其疫苗相关国家的防疫政策，也可能被拒绝乘坐飞机等交通工具。

☐ 동의함/同意 ☐ 동의하지 않음/不同意

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입국허가는 불허됨

如果不同意，不予批准“再入境许可”申请。

日期 2022년 (年) 월 (月) 일 (日)
(서명 또는 인) (签或章)